울산광역시 중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
(하경숙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17

발의연월일 : 2016. 1. .

발 의 자 : 하경숙 · 서경환 · 천병태 이효상 · 이복희 · 김경환 · 신선봉(7명)

1. 제정이유

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라 한부모가족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제정의 목적,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(안 제1조, 제2조)

나.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
다. 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-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을 수립·시행해야 함

라.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마.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-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

바. 지원중지, 환수에 관한 사항(안 제7조, 제8조)

-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원중지 및 기 지급한 지원액에 대해 환수할 수 있음

사.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
3. 근거법규 :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

4. 조 례 안 : "따로 붙임"

울산광역시 중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한부모가족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적용범위) 울산광역시 중구 한부모가족(이하 "한부모가족"이라 한다)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.
제3조(책무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.
제4조(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해마다 울산광역시 중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을 수립·시행해야 한다.
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1. 방향과 추진 목표
2. 관련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
3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지원대상)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1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
2. 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
3.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
제6조(지원사업)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1. 한부모가족의 생계자금 긴급지원 서비스 사업
2.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
3.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교육 및 홍보사업
4. 한부모가족에 필요한 보건·의료서비스 지원
5. 한부모가족 역량강화를 위한 심리·정서지원에 관한 사업
6.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7조(지원중지)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.
1. 울산광역시 중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옮긴 때
2. 제5조의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때
3.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때

제8조(환수) 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.
1.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
2.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

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부과·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.
제9조(예산확보)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.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으로 본다.

의 안 심 사 보 고 서

(의 안 번 호 1217)

1. 의 안 명 : 울산광역시 중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

2. 심사경과

- ❍ 제출연월일 : 2016. 2. 1.(월)
- ❍ 제 출 자 : 하경숙 외 6명
- ❍ 위원회회부 : 2016. 2. 04.(목)
- ❍ 위원회심사 : 2016. 2. 16.(화)

3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하경숙 의원)

가. 제안이유

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라 한부모가족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- ❍ 조례제정의 목적,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(안 제1조, 제2조)
- ❍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❍ 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  -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을 수립·시행해야 함
- ❍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❍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  -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
- ❍ 지원중지, 환수에 관한 사항(안 제7조, 제8조)
  -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원중지 및 기 지급한 지원액에 대해 환수할 수 있음
- ❍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
4. 근거법령

- ❍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

5. 검토보고(전문위원 김익희)

○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라 우리구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용범위, 책무, 지원대상, 지원사업 등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부모가족이 효과적으로 잘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,

○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 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